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어린이 장난감·장신구 등 어린이용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나.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한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신고한 자는 신고한”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을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등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제9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 마.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95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